

영등포구의회  
제19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김용범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6. 10. 25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民 基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158호로 2016년 10월 10일 김용범 의원과 김재진 의원 외 2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-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하여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카드 수수료 지출이 증가하여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, 회원모집 및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.
- 반환규정을 법령근거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공제 후 반환 (안 제10조제3호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감염병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 반환 (안 제10조제5호, 안 제10조제6호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-18호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잦은 사용취소를 억제하고,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용료 반환 규정을 일부 보완 하려는 것으로,
-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 하기 위하여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분쟁 해결기준」을 준용하여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-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 중 당해 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 되었으나, 현재 영등포 제1·2스포츠센터 사용료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반환하고 있어, 조례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과는 맞지 않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,
-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에 사용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한 수입 감소와 카드 수수료 지출 등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고 회원모집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. 일례로 영등포 제1·2스포츠센터에서는 2015년 총 사용료 수입금 59억 6,255만원 중 4.8%인 2억 9,047만원을 반환했으며, 지출된 카드 수수료도 639만원에 이르고 있음.

〈2015년도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금 현황〉  
(단위:만원)

구 분	총 수입금	사용개시 예정일 이후	
		반환금	카드 수수료
건 수	166,501	14,935	14,935
금 액	596,255	29,047	639

※영등포시설관리공단 제공 자료

- 따라서 영등포 제1·2스포츠센터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시설 이용자의 빈번한 사용취소를 억제하며,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.

- 다음으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·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을 통제하되,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반환하려는 조항과,
-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소비자가 시설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기간만큼 사용료를 반환하려는 조항은
-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조문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조치로 보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소비자기본법

**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·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
##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**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**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단체·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-18호)

**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**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, 별표 II, 별표 III, 별표 IV와 같다.

(별표 Ⅱ)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2-2)									
분	쟁	유	형	해	결	기	준	비	고
5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									
- 개시일 이전				○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					
- 개시일 이후				○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					
<p>○ 사은품 반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</li> <li>· 사은품 미사용 시 : 해당 사은품 반환</li> <li>· 사은품 사용 시 :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(단,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.)</li> <li>·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: 현존상태로 반환</li> <li>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·해지 시: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.</li> </ul> <p>○ 체육시설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종합체육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</li> </ul> <p>○ 레저용역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</li> </ul> <p>○ 할인회원권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</li> </ul>									